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4	1	1992. 1. 9	총재 김 건

의안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

제외취지 중소기업지원시책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하여 시중은행의
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비율을 상향조정코자 전기와 같이 의결할
것을 제의함

< 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

한국은행법 제7조

① (생 략)

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
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④~⑥ (생 략)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현	행	개	정	비 고
제1조	(생 략)	제1조	(현행과 같음)	
제2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금융기관은 「한국은행법」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.		제2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	(현행과 같음)	
1~7.	(생 략)	1~7.	(현행과 같음)	
8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, 특히 시중은행 및 한국외환은행은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35%이상, 지방은행은 80%이상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%이상 (한국은행으로부터 상업어음재할인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)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		8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,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45%이상, 지방은행은 80%이상, 외국 은행 국내지점은 35%이상 (한국은행으로부터 상업어음재할 인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)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		o 시중은행의 중소기업대출지원 비율 상향조정 (35% -> 45%) o 1989. 12. 30 한국외환은행 민영화에 따른 조문정비
9.	(생 략)	9.	(현행과 같음)	
제3조~제12조	(생 략)	제3조~제12조	(현행과 같음)	
(신 설)		부 칙		
		1.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2. 2. 1 부터 시행한다.		o 시행일자 명시
		2. (경과조치)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. 11. 30까지는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지원비율을 40%이상으로 운용한다.		o 자금운용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동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